

의안번호	2211395
의 퇴 인	정춘생의원
회 답 일	2025.8.29.
추 계 번호	25D3708

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및연합협의회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,800만원, 2029년 2,1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평균
공무원직장협의회및연합협의회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(안 제5조의3)	38	-	-	21	-	59	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의3 (근무시간 면제자 등)	-공무원직장협의회 등 소속 공무원이 보수의 손실 없이 이 법에 따른 협의·교섭,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및연합협의회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둠 -공무원직장협의회및연합협의회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음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의3 (근무시간 면제자 등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공무원직장협의회및연합협의회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(이하 '심의위원회'라 함)의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횟수는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2024년 운영된 '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'의 사례를 준용함
 - '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'의 위원은 15명으로 공무원대표 위원 5명, 정부 위원 5명, 공익 위원 5명(위원장 1명 포함)으로 구성되었으며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
 - 이 중 민간위원은 공익 위원 5명이고, 공무원대표 위원 5명은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 지급 대상¹⁾임
 - 전원회의 11회, 간사회의 9회, 공익회의(공익위원 간 회의) 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의결
 - 각 회의 중 회의참석수당 지급 대상은 전원회의 10명, 간사회의 2명(공무원대표 위원 1명, 공익위원 1명), 공익 회의 5명
- 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29년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적정성 여부만 심의하므로 회의 개최 횟수는 2026년의 50%로 가정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는 2026년과 2029년에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전원회의, 간사회의, 공익회의별 회의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각 10명, 2명, 5명으로 가정하고 회의 개최 횟수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준용함
 - 회의참석수당은 추계기간 동안 25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

1) 「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 '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' 회의 시에도 공무원대표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함

- 추계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8백만원, 2029년 21백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천원)

구분	수당 지급 대상	2026			2029		
		회의 개최 횟수	수당	계	회의 개최 횟수	수당	계
전원회의	10	11	250	27,500	6	250	15,000
간사회의	2	9	250	4,500	5	250	2,500
공익회의	5	5	250	6,250	3	250	3,750
		소계		38,250	소계		21,2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

[참고자료]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 및 가입 현황('23.12.31. 기준)

구분		직장협의회 설립 수 및 가입인원
총계		552개 기관 / 87,306명
헌법기관 [1개 48명]		헌법재판소(48)
	교육부 (28개/3,106명)	강릉원주대(139), 강원대(180), 경상국립대(240), 경인교대(77), 공주교대(42), 공주대(113), 국사편찬위원회(33), 군산대(160), 금오공대(62), 대구교대(45), 목포대(108), 목포해양대(80), 부경대(254), 부산교대(47), 서울과기대(110), 전주교대(7), 제주대(195), 진주교대(38), 창원대(102), 청주교대(39), 춘천교대(35), 충남대(222), 한경대(96), 한국교원대(151), 한국교통대(122), 방통대(185), 한국해양대(165), 한밭대(92)
	산업통상자원부 (1개/55명)	국가기술표준원(55)
	보건복지부 (1개/55명)	국립나주병원(55)
	고용노동부 (52개/2,581명)	본부(214), 서울지방고용노동청(406), 중부지방고용노동청(607), 부산지방고용노동청(494), 대구지방고용노동청(328), 대전지방고용노동청(343), 중앙노동위(135), 산재보험재심사위(28), 고객상담센터(26)
	국토교통부 (1개/20명)	철도특별사법경찰대(20)
	질병관리청 (1개/95명)	질병관리청(95)
	기상청 (14개/488명)	본청(110), 수도권청(37), 부산청(27), 광주청(16), 전주청(26), 강원청(39), 대전청(24), 대구청(29), 청주청(12), 제주청(2), 국가기상위성센터(28), 기상레이더센터(29), 기상과학원(37), 항공청(53)
자치단체 [25개/ 15,982명]	서울 (10개/9,413명)	동대문(1,007), 서대문(1,098), 성북(910), 금천(716), 강서(1,150) 관악(832), 강남(578), 강북(1,013), 송파(1,123), 용산(986)
	대구 (8개/3,950명)	중구(402), 동구(890), 서구(153), 남구(523), 북구(50), 수성(885), 달서구(497), 달성(550)
	인천 (1개/83명)	강화(83)
	대전 (1개/100명)	의회사무처(100)
	강원 (2개/1,173명)	홍천(626), 영월(547)
	전남 (1개/661명)	화순(661)
	경북 (1개/501명)	영양(501)
	경남 (1개/101명)	경남도의회사무처(101)
교육청 [4개/562명]		울산강남교육청(40), 경기도교육청(234), 충남교육청(244), 전남교육청(44)
경찰청(해경 설립기관 없음)		301개 기관 중 278개 기관 설립, 56,555명 가입
소방청		284개 기관 중 146개 기관 설립, 7,759명 가입

자료: 행정안전부 2025년 예산 사업설명자료